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1억원(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)”을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2제5항 중 “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”을 “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 등 영업기준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제4항 중 “법인보험중개사”를 “법 제178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”로 한다.

제4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“기존보험계약”이라 한다)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
2.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, 제1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14호, 제1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

제44조제1항제3호의 “환급금액”을 “환급률”으로 한다.

제6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제6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보험회사의 위험,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모집에 관한 경력 제공)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(이하 이 조에서 “보험회사등”이라고 한다)는 보험협회가 제84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경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보험협회는 수집된 경력정보를 보험회사등과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별표4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교육기준
가. 교육 과목	1)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2) 보험 관련 법령 3) 해당 <u>간단보험상품</u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 첨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)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<u>1억원</u> (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<u>3억원</u>)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다만,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.	제33조(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)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<u>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</u> 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다만,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.
제33조의2(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) ① ~ ③ (생략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</u>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	제33조의2(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기준 등 영업기준</u>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
제38조의2(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) ① ~ ③ (생략)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	제38조의2(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

의 사항을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2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

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"기존보험계약"이라 한다)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
2.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, 손해보험상품,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

사항을 법 제178조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2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

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"기존보험계약"이라 한다)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
2.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, 제1조의2제3항제1호 내지 제14호, 제1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3

제44조(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·고지사항)

①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"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2. (생략)
3.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
4.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
5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5조(재무건전성 기준)

① (생략)

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

2. (생략)

3. 보험회사의 위험,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

호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

제44조(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·고지사항)

①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"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보험금액 및 환급률
4. 예정 이자율
5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5조(재무건전성 기준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2. (현행과 같음)

3. 보험회사의 위험,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

충족할 것
<신 설>

[별표 4] 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
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

1. ~ 2. (생략)
3.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
 대리점의 교육기준

구분	교육기준
가.	1)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
교육	2) 보험 관련 법령
과목	3) 해당 <u>간단손해보험상품</u>

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 제84조의2(모집에 관한 경력 제
 공)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, 보험
 중개사 및 보험설계사(이하 이
 조에서 “보험회사등”이라고 한
 다)는 보험협회가 제84조제2항
 제5호의2에 따른 경력 등을 파
 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
 공하여야 하며, 보험협회는 수
 집된 경력정보를 보험회사등과
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
 다.

[별표 4] 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
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
 대리점의 교육기준

구분	교육기준
가.	1)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
교육	2) 보험 관련 법령
과목	3) 해당 <u>간단보험상품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보험과
연 락 처	02-2100-2964